

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2차 모집 공고

국내·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확산을 위한 『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협약기간 약 4개월)
* 연내('26)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유형 및 내용

- (지원유형)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해 공공확산형, 민간·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① 공공확산형	② 민간·지역 확산형	③ 해외실증형
· 정부부처 중심으로 국가 산업 및 정책에 기반한 실증	· 서비스로봇의 국내 민간·지역 수요처 실증	· 국내 서비스로봇의 해외수요처 실증

- (지원대상 및 구성) 지원유형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및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을 필수로 포함하여 구성

구분		공공확산형	민간·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컨소시엄	주관기관	수요처 (정부 부처*)	수요처 (민간, 지자체 등)	국내 로봇기업
	참여기관	로봇기업 등	로봇기업 등	해외 수요처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 부처 참여 불가 시,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 참여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산하 기관임을 증빙해야 하며 부처의 불참 사유 등 입증 필요

- (사업비 구성) 각 유형별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 참조

구분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총사업비(100%)	
				민간부담금	국비
공공확산형	• 주관기관(수요처 등)	선택	0%~30%	최소 30%	최대 70%
	• 참여기관(로봇기업 등)				
민간·지역 확산형	• 주관기관(수요처)	필수	25%~50%	최소 50%	최대 50%
	• 참여기관(로봇기업 등)	선택	0%~25%		
해외실증형	• 주관기관(로봇기업)	선택	0%~25%	최소 50%	최대 50%
	• 참여기관(수요처)	필수	25%~50%		

* 민간부담금 내 지방비 출자 가능하며, 과제 신청시 '지방비 납입 협약서' 제출 필수

○ (지원분야)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로봇 예시	
산업	①농업	▪ 농가 인력부족 대응 및 고품질 먹거리 생산 지원	▪ 과실 수확·운반용 로봇, 농작업 로봇 등
	②물류	▪ 배송, 화물, 산업 현장에서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	▪ 배송 로봇, 화물적치 및 재고 관리 로봇, 창고관리시스템(WMS) 연동 로봇 등
	③푸드테크	▪ 식음료 현장 서비스 효율화(조리, 서빙 등) 지원	▪ 식당 등 조리·배식·서빙 로봇 등
	④산업안전	▪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 수중 청소로봇, 원격제어 건설 로봇, 고위험 업무 대체 로봇 등
사회	⑤국방	▪ 병력 부족 대응과 안보 역량 첨단화	▪ 군사용 순찰·배송로봇, 테러 대응, 폭발물 탐지·제거, 감시·경계 로봇 등
	⑥사회안전	▪ 방역, 보안, 치안 등에 로봇활용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 기여	▪ 학교 주변 순찰·방범 로봇, 방역로봇 등
	⑦재난대응	▪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 소방 로봇, 인명탐색·화학테러 대응 로봇 등
	⑧의료	▪ 원격진료, 간호보조 등에 로봇활용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 재활로봇, 수술도구이송로봇, 수술로봇 등
	⑨복지	▪ 사회적 약자, 돌봄인력 등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반려로봇, 박물관·미술관 등 시 안내로봇, 시각 장애인 간이 탑승형 로봇 등
⑩기타	▪ 상기 외 기타 서비스 분야	▪ 9대 분야 및 신기술/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로봇	
⑪신기술/신산업	▪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 로봇의 산업 적용을 위한 사전실증	▪ 휴머노이드 로봇, 이동식 협동 로봇 등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적정성 및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은 주관기관만 가능함 (참여기관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사업비 편성기준 >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비고
직접 사업비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현물)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가능(총사업비의 10% 이내)	선택	총사업비의 10%이내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 로봇 구매(또는 제작) 비용 - (로봇 가격) 로봇 HW, SW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	필수	총사업비의 70%이상 (현금)
	재료비		□ 재료 등 관련 부대 비용 - 재료 구입 등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필수	총사업비의 10%이내 (현금)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2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지원국비의 0.6% 산정	필수	총사업비의 20%이내 (현금)
그 외 세세목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선택		
간접 사업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정부부처, 지자체,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직접비의 5%이내 (현금)

참고1

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산정 기준

- (필수사항)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일괄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	300,000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주관기관)이 정산 대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활용 기관 필수 발급
 -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3개월('27.3.31.)

- (선택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예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신청자격

-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사유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총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5. 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6. 7. 6. ~ 8. 4. (30일간)	· 사업공고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접수	'26. 7. 20. ~ 8. 4. 15:00 까지(16일간)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진흥원
↓			
사전검토	'26. 8월 2주차	·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 · 재무건전성 평가	사전검토위원회
↓			
1단계 서면평가	'26. 8월 3주차	· 사전검토 통과 과제 대상 사업계획서 심의	평가위원회
↓			
2단계 발표평가	'26. 8월 4주차	·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평가위원회
↓			
3단계 현장심사 (필요시)	'26. 8월 5주차	· 발표평가 통과과제 중,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필요과제 대상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			
4단계 최종평가	'26. 8월 5주차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26. 9월 1주차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진흥원→선정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6. 9월중	·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흥원↔선정기관

※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 지원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평가절차 조정 가능(조정 시, 개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 '사전지원제외*' 대상 제외 * '필수서류 제출 여부, 수행기관(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검토 *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은 p8(사전검토위원회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표) 참고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심의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필요시)	평가대상	○ 1·2단계 통과 과제 중 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최종 과제 선정 - 최종 사업비 결정

- * 모든 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2단계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1단계·2단계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표 >

구분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2.13.) <별표2> 참고

○ (평가 기준 및 내용) 선정평가는 총 4단계(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심사(필요시)·최종평가)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 (①단계 서면평가) 서면평가 기준표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심의 진행

< 서면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목표 및 실증 내용(30)	· 실증 목표 및 시나리오의 명확성 및 도전성	20
	· 실증 환경(수요처)의 준비성 및 적합성	10
실증 로봇 및 시스템(30)	· 실증 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여부	10
	·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 로봇 및 로봇 기술(H/W, S/W)의 실증 적합성 및 부합성	10
사업 수행 역량(20)	· 주관·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10
	· 투입 인력의 전문성	10
기대 효과 및 확산 계획(20)	· 성과활용 기간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10
	·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비용 절감, 인력 부족 해결 등)	10
합 계		100

- (②단계 발표평가)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 실시

< 발표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목적의 부합성(1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목표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 사업 기간 중 로봇 실증 및 실현 가능성	10
	·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 능력, 기대효과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0)	· 로봇 기술 역량 및 사업 운영 능력	10
	· 교육, 유지보수 등 지원 역량	10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10)	·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5
	·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사업비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③단계 현장심사(필요시))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현장심사 시 별도 탈락 과제 無
 -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 (④단계 최종평가) 각 단계별 평가결과 및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비 확정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국비지급)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전용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 ✓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 (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이 지정하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 (RCMS)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6. 7. 6.(월) ~ '26. 8. 4.(화), 15:00까지
- (접수기간) '26. 7. 20.(월) ~ '26. 8. 4.(화), 15: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6-029호

-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주의사항
 - ①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④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메일제목] (시스템 오류)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2차 모집 공고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수신자] 담당 간사 2인(도가이 책임, 배지훈 책임) 모두에게 메일 송부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 ¹⁾	1 사업계획서		○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양식 3
	4 참여의사 협약서	○	○	○	양식 4
	5 현금·현물출자 협약서 ²⁾	○	○	○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협약서	○	○	○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
	8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³⁾	-	○	○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	○	-
	12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	○	○	양식 7
	14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⁴⁾	○	○	○	양식 8
	15 과제 중복지원 여부 협약서	○	○	○	양식 9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	양식 9
해당 시 제출	1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협약서 ⁵⁾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해당시)
	2 지방비 납입 협약서	○	-	-	양식 11(해당 시)
	3 (해외실증형) 해외수요처 구매의향서 ⁶⁾		해당 기관 제출		-

- 1)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 될 수 있음
 - 2) <현금 및 현물 출자 협약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협약서 제출 필수이며, 현물 매칭은 인건비에 한하여 가능 (총 사업비의 10% 이내)
 -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5년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3년, '24년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 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NTIS 제재정보 검색 방법 (로그인 필요) : NTIS 홈페이지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 참여제한 여부 개별 조회 후 결과 PDF 저장
 - * 조회 대상기관 : ①주관기관 ②참여기관 [소속기관 제재 확인(별도 신청 필요)]
 - * 조회 대상인물 : ①주관기관의 장 ②참여기관의 장 ③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본인 제재확인 - 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5)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 6) <해외수요처 구매의향서> 판매처, 구매처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직인·서명 등이 포함된 구매의향서
-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26.2.13.)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 (‘24.1월, 범부처 합동)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Q&A (별첨 참고)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서비스로봇 실증팀	도가이 책임	053-210-9673	gayi310@kiria.org
		배지훈 책임	053-210-9674	bjh1991@kiria.org
시스템 관련 (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kch@howonsoft.com ojw@howonsoft.com
	사업총괄팀	이용래 수석	053-210-9674	yr2000@kiria.org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협약 기간중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증빙자료 등)은 사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 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컨소시엄 전체)은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렌탈 등)은 불가함
 -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